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4
----------	-----

2014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1. 28. 이윤희 의원(찬성자 18명)
- 나. 회부일자 : 2014. 12. 2.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윤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 직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 2) 인사추천위원회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방안 모색,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 및 신규 임용, 연장의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3조).
-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처장,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4조).
- 4)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 5)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7조).
- 6)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1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방안을 비롯하여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추천 및 신규 임용, 계약 연장 등 의장의 인사추천권한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음.

2 조례안의 제정 취지 검토

- 현재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일부 일반직 공무원(방호·속기·운전 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의회의장은 단체장의 임명권 행사 이전에 사전절차로서 “추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장을 명령·통제함으로써 위임된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확정·발표(2014.12)한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장은 제외)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의회직렬 신설 추진안이 제안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법체계와 국정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권 독립 방안 및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추천·신규임용·연장 등’ 의장의 주요 인사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위원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방안과 인사추천기준의 결정,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추천 및 신규임용 또는 연장의 검토” 등에 관련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가짐.
- 사무직원은 의회에 인사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직원(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과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공무원(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바, 조문안을 따를 경우 사무직원 전체의 신규임용에 대해 자문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의장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또는 연장에 관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기능(안 제3조)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방안 모색
2.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3.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추천 및 신규 임용 또는 연장의 검토
4. 의회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의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음(안 제4조).

-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 9명의 위원 중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으로 위촉(또는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회 내부 조직과 관련된 인사행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수의 위원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방식은 탄력적인 인사행정 집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인사분야 관련성을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과 같이 그 범위가 모호한 외부단체에게 2명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인사(人事)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5 결 론

- 의장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인사권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됨.
- 다만, 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통하여 의장의 인사권한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약할 경우에는 의장의 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인사행정은 전형적인 공행정영역에 해당되는 분야로서 업무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야 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단체의 인사행정 관여는 오히려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인사추천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 구성 방식을 일부 수정함.

나. 주요내용

조례안 제4조제1항의 '9명의 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함(안 제4조제1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4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 구성 방식을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조례안 제4조제1항의 '9명의 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u>9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p> <p>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사무처장 2.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3.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 4. <u>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u>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7명</u>----- -----.</p> <p>② ----- -----.</p> <p>③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 3. ----- ----- ----- 4. <삭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 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방안 모색
2.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3.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추천 및 신규 임용 또는 연장의 검토
4. 의회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사무처장
2.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3.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

제5조(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이전까지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심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청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